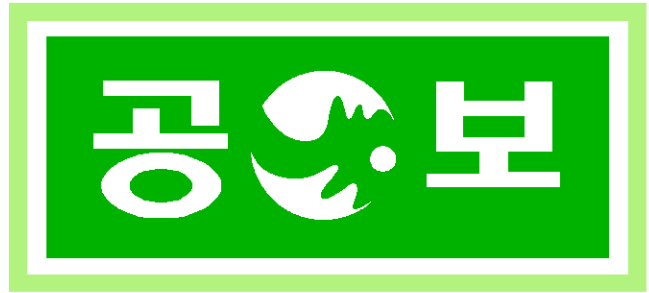
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구 관	기 관 의 장



제 711 호 2011. 10. 10(월)

고 시

○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-85호[하천점용 허가 고시] 2

공 고

○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616호[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3

○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2011-618호[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 5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기획홍보실(☎219-7207 행정7207)

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1-85호

하천점용 허가 고시

「하천법」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점·사용허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1년 10월 1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성 명	울산광역시 북구청장(도시녹지과)			
주 소	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			
점용위치	◦ 어물동 1240-1번지	하 천 명	금천(지방하천)	
점용목적	교량 신설	점용면적 (㎡)	구 분 계	영구
			지방하천	182
점용기간	◦ 영 구 : 2011. 12 ~ 영구		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1-616호

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0월 1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□ 개정목적

- 「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」 제6조·제10조(차별금지)에 의거, 통·반장의 해촉과 관련한 장애인 차별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에게도 평등한 통·반장의 위촉기회를 제공
- 통장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관련규정을 신설하여 통장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향상에 기여

□ 주요개정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조례 위임조항 변경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
 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6항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
 - 「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제6조(통·반장의 해촉) 제1항제1호 삭제
 - 삭제조항 :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1월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
- ※ "울산 장애인 조례개정 추진연대"로부터 개정요청 접수

○ 통장교육 조항 신설

- 통장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(교육방법 : 직접 또는 위탁)
- 위촉 전 기본교육 및 재직 중 심화교육으로 구분 운영
- 통장교육 활성화 방안 규정
 - 신규통장 위촉 시 기본교육 이수
 - 심화교육 미 이수자 통장 연임 제한
- 통장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교육 유예사항 규정

○ 오기, 오타, 띄어쓰기 등 기타문구 개정

□ 근거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5항

□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 : 따로 붙임

□ 의견제출

- 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1. 10. 30(일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주민참여과장,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참여과 자치행정주무관 (전화 052-219-7653, FAX 052-219-7659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 - 성명(법인,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 - 기타 참고사항

□ 기타

- 「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 설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주민참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 합니다.

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1-618호

「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 기본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1년 10월 1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주민참여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, 참여자 실비보상 등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정책 추진을 위하여 현행 조례를 새롭게 정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(안 제2조)
- 나. 주민의 권리와 책무(안 제4조), 구청장의 책무(안 제5조)
- 다.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자치 기본계획 수립(안 제6조)
- 라. 주민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주민참여 학교운영 등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마련(안 제7~11조, 제12조)
- 마. 구정 정책에 관한 토론 청구(안 제13조),
- 바. 회의자료 공개와 구정정책토론 청구 기회 제공 등 명문화(안 제16~17조)
- 사. 주민참여 교육 등에 대한 위탁(안 제18조), 주민참여 포인트(안 제19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 : 주민참여과장)에게 전화·FAX 또는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(전화 219-7652, FAX 219-7659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 타

「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예고기간 동안 우리 구 주민참여과에 비치하여 예고기간 동안 공시합니다.